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용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70
----------	-------

발의연월일 : 2026. 9. 30.

발 의 자 : 윤용근 · 김 건 · 김예지
김승수 · 조정훈 · 송석준
이소희 · 조지연 · 이종배
김태호 · 임종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업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카드 매출내역과 가맹점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정보 시스템 접근이 어렵거나 회계·세무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 매출액과 실제 정산 금액 사이의 차액에 가맹점수수료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액이나 상계액, 지급 보류된 금액 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어떤 사유로 발생하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에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와 공제 또는 상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 등을 매월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세한 신용카드가

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거래조건”을 “거래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전월의 신용카드 거래 및 그 정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월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1. 신용카드 거래에 따른 매출액
2. 신용카드가맹점에 지급한 대금
3. 가맹점수수료
4. 신용판매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상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
5. 지급을 보류한 신용판매대금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조건 등의 주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u>거래조건</u> 의 주지의무) (생략) <u><신 설></u>	제18조(<u>거래조건 등의 주지의무</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신용카드업자는 전월의 신용카드 거래 및 그 정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월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u> 1. <u>신용카드 거래에 따른 매출액</u> 2. <u>신용카드가맹점에 지급한 대금</u> 3. <u>가맹점수수료</u> 4. <u>신용판매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u> 5. <u>지급을 보류한 신용판매대금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u> 6. <u>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u>